

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: 2022. 10. 14.

제 출 자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상위법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」 매각대행사무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」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인용 조항 현행화
 - 법 제71조의2제1항 ⇒ 제103조의3제1항(안 제4조)
 - 시행규칙 제52조의3 ⇒ 제73조의8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2.8.9. ~ 2022.8.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, 부패유발요인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영향 없음
- 5) 개인정보사전검토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03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규칙 제52조의3”을 “규칙 제73조의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지방세징수법

제103조의3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·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,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,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2. 1. 28.]
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

제73조의8(매각대행 수수료)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[제52조의3에서 이동 <2022. 3. 18.>]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세정과장 김남호
연락처	(033) 330-2270